

4.4.19 연구개발성과급 지원 지침

제정 2019.04.22.

개정 2020.02.05.

개정 2020.06.10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초당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고 한다)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규정에 의한 외부연구과제를 수행한 본교의 교원에게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연구개발성과급(이하“성과급”이라고 한다)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) 성과급 지원대상은 본교가 연구관리기관으로 수행한 연구간접경비가 계상·입금된 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전임교원으로 한다.

제3조(평가 및 지원시기) 성과급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,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결산이 완료된 익년도에 연구과제별 책임자의 전년도 연구간접경비 수입액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급을 차등·지원한다.

제4조(평가기준) ① 성과급은 책임자의 전년도 연구과제별 연구간접경비 수입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연구업적 및 연구수행실적 평가 합계점수에 해당되는 지원율을 곱하여 결정하며, 성과급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 및 별표와 같다.

1. 연구업적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(후보지포함) 이상의 논문게재실적
2. 연구업적 중 특허 등록실적
3. 전체 교외연구비 입금액 누계
4. 연구과제별 연구간접경비 계상률 등

② 평가자료는 본교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연구업적평가 점수 및 산학협력단 연구비중앙 관리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한다.

제5조(지급방법) 성과급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책임자 연구과제별로 결정된 금액을 지원대상 자별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후 책임자의 계좌로 입금하고, 그 입금내역을 통보한다.

제6조(지원방법) ① 성과급의 지원범위는 당해 회계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서 수입된 연 간접경비 결산 총액의 10% 이내에서 지원한다.〈개정 2020.02.05.〉

- ② 연구간접경비로 연구과제에 대응자금 및 기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는 성과급 평가기준에 의해 연구책임자의 연구간접경비 수입액을 산정한 후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.
- ③ 성과급은 책임자에게 일괄 지급하되,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자율적 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단,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.
- ④ 집단사업의 성과급은 연구간접경비 관리운영지침 제7조 ②항의 자체운영비에서 20%범위 내로 연구책임자가 자율적 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단, 연구책임자에게 단독으로

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.

- ⑤ 필요한 경우 특정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총장 승인을 득하여 성과급 지원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지급제한) ① 산학협력단의 재정상황이나 책임자의 연구비 선지급금 미회수(완결과제) 및 횡령, 징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미지급 혹은 연기할 수 있다.

- ② 연구책임자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(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)의 참여제한 및 위반 또는 산학협력단에 행·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은 지급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적용례) 2019년 3월 1일 이후 협약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20.06.10.>

성과급 평가기준

1. 산출내역표

가) 산출대상 연구과제 정보

과제 번호	학부(과)	책임자	연구과제명	지원기관	연구기간		① 대학간접비 수입액	② 연구비 계약액	
					시작일	종료일		②-1 연구비총액	②-2 대학간접비

나)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별 점수

③ 논문게재실적						④ 특허등록 실적						⑤ 연구수행실적							
구분	③-1 교외연구과제 수행논문			③-2 기타연구 수행논문			구분	④-1 교외연구과 제 수행 특허등록			④-2 기타연구 수행 특허등록			구분	⑤-1 교외연구비 입금액		구분	⑤-2 대학간접비 계상률(%)	
	SCI(E)	KCI	계	SCI(E)	KCI	계		국제	국내	계	국제	국내	계		금액			계상률	
편수							건수							금액			계상률		
점수							점수							점수			점수		

다) 성과급 산출액

⑥ 성과급 산출액				등급	점수	지 원 율	- 지원액 = 책임자가 수행한 연구과제의 당해연 도 대학 간접비 수입액 x 지원율(%) - 대응자금 및 별도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의 지 원액 = 책임자가 수행한 연구과제의 대학간접비 수입 액 - (대응자금 + 별도운영비) x 지원율(%) - 지원율은 징수된 대학간접비의 범위 내에서 산 출
⑥-1 점 수 계	⑥-2 등급	⑥-3 지원율(%)	⑥-4 지원액				
				S	60 이 상	12%	
				A	50 이 상	10%	
				B	50 미 만	8%	

2. 적용기준

- ① 대학간접비 징수액 : 당해연도 회계기간에 수입된 연구과제별 대학간접비의 합계
(대학간접비 관리계좌 수입액만 인정)
- ② 연구비 계약액 : 산출된 대학간접비 수입액에 적용된 연구과제의 연구비 계약액
 - ②-1 총 액 : 대학간접비를 포함한 연구비 계약액의 총액
 - ②-2 대학간접비 : 연구비 계약액에 포함된 대학간접비 계상액
- ③ 논문게재실적 : 책임자의 당해연도 연구업적 중 논문게재 실적
 - ③-1 교외연구과제 수행논문 : 교외연구과제 수행성과와 관련된 논문게재 실적
 - ③-2 기타연구 수행논문 : 교내연구과제 등 기타연구 수행성과와 관련된 논문게재 실적
- ④ 특허등록실적 : 책임자의 당해연도 연구업적 중 특허등록 실적
 - ④-1 교외연구과제 수행 특허등록 : 교외연구과제 수행성과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

- ④-2 기타연구 수행 특허등록 : 기타연구 수행성과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
- ⑤ 연구수행실적 : 책임자의 당해연도 전체 교외연구비 입금액 및 간접비 계상률
- ⑤-1 교외연구비 입금액 : 당해연도 전체 교외연구비 입금액 누계
- ⑤-2 대학간접비 계상률 : 연구과제별 연구비 예산 내 편성된 대학간접비 계상률
- ※ 연구비 예산의 간접비 계상률 = (대학간접비 / 연구비총액) x 100

- ⑥ 성과급 산출액 : 책임자의 연구과제별 점수 계, 등급 및 지원율(%), 지원액
- ⑥-1 점수 계 : 논문게재, 특허등록, 연구수행실적 평가 합계점수
- ⑥-2 등급 : 평가 합계점수에 대한 3단계 등급(S, A, B)
- ⑥-3 지원율(%) : 평가 합계점수에 따른 성과급 지원율
- ⑥-4 지원액 : 책임자의 전년도 연구과제별 간접비 수입액 x 지원율(%)

3.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

평가 영역	평가 항목	평가 지표	이공계열		인문사회·예체능				
			평가기준	배점	평가기준	배점			
가) 논문게재 실적	1) 교외연구과제 수행 논문	① SCI(E), SSCI, A&HCI	2편 이상 1편	20 10	1편 이상	32			
		② KCI	2편 이상 1편	10 5	1편 이상	20			
		평가항목 최상위 배점		20		32			
		2) 기타 연구수행 논문	③ SCI(E), SSCI, A&HCI	2편 이상 1편	14 7	1편 이상	24		
	④ KCI		2편 이상 1편	7 4	1편 이상	16			
	평가항목 최상위 배점			14		24			
	나) 특허등록 실적		3) 교외연구과제 수행 특허등록	⑤ 국제특허등록	2건 이상 1건	20 10	※ 디자인학부는 특허등록 실적을 포함		
		⑥ 국내특허등록		2건 이상 1건	10 5				
평가항목 최상위 배점				20					
4) 기타 연구수행 특허등록		⑦ 국제특허등록		2건 이상 1건	14 7				
		⑧ 국내특허등록	2건 이상 1건	7 4					
		평가항목 최상위 배점		14					
		다) 연구수행 실적	5) 교외연구비 입금액	⑨ 3.0억원 이상	책임자가 수행한 전체연구비 입금액 누계	12			책임자가 수행한 전체연구비 입금액 누계
⑩ 2.0억원 이상				10		22			
⑪ 1.0억원 이상	8			20					
⑫ 5천만원 이상	6			18					
⑬ 5천만원 미만	4			16					
평가항목 최상위 배점	12			24					
6) 대학간접비 계상률	⑭ 20% 이상			대학간접비 계상액		20	대학간접비 계상액	20	
	⑮ 20% 미만 ~ 12% 이상		10		10				
	⑯ 12% 미만		5		5				
	평가항목 최상위 배점		20		20				
	평가항목 최상위 배점 계			100		100			